



### 대법원 「전자가족관계시스템」운영

- 내용 : 대법원 「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」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열람·발급 인터넷 신고(출생, 개명, 창설, 정정, 등록기준지 변경) 가능
- 이용방법 :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<https://efamily.scourt.go.kr>)접속  
→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→ 증명서 열람·발급 및 인터넷 신고
- 문의 : 사용자 지원센터 ☎1899-2732, 031-776-7878  
※ 평일(09:00~18:00) 상담 가능

### 관련기관 연락처 안내

- 원주시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☎ 033-737-2482
-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☎ 033-738-1000
- 대한민국법원 등기민원 콜센터 ☎ 1544-0773
- 국세청 ☎ 126
-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☎ 1345
- 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
- 한국전력 ☎ 123
- 국민연금공단 ☎ 1355
- 한국주택공사 ☎ 1600-1004
- 도로교통공단 ☎ 1577-1120



알면 유익한 정보

#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

이런 혜택이  
있어네!!



# 출생신고 이후

##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(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)

- **주요내용**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

전국 공통 서비스	원 주 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모급여(22년 영아수당)</li> <li>• 양육수당</li> <li>• 아동수당</li> <li>• 해산급여</li> <li>•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</li> <li>•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</li> <li>• 첫만남이용권</li> <li>• 전기료 경감(출산가구, 3명 이상 다자녀)</li> <li>• 3명 이상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경감</li> <li>• 3명 이상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</li> <li>• KTX 다자녀 행복</li> <li>• SRT 다자녀 가족 할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출산축하금</li> <li>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</li> <li>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</li> <li>• 산후건강관리지원</li> <li>•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</li> </ul>

- **신청자격** : 신청인 출산자(산모) 본인 또는 배우자
- **신청장소** :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 
온라인 정부24(www.gov.kr) → “행복출산”, 온라인 복지로 신청(bokjiro.go.kr)
- **구비서류**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)  
※ 출산가구의 전기료 감면, 다자녀(3명 이상) 공공요금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수도) 감면 신청 경우 요금별로 세대주, 고객번호를 꼭 알아야 함(납부고지서 확인)  
※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미신청시, 서비스별 개별 신청
- **문의처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### 육아기본수당

- **지원대상** : 2019. 1. 1. 출생아부터(입양아 포함)
- **지원기간** : 출생 월부터 만8세 미만까지(0~95개월)
- **지원액** : 12~47개월(월 50만원), 48~71개월(월 30만원), 72~95개월(월 10만원)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도민 APP “강원특별자치도 통합서비스 플랫폼(우리도)”에서 온라인 신청
- **문의처** : 원주시 보육아동과 ☎ 033-737-2756



### 부모급여(22년 영아수당)

- **지원대상** : 2023. 1. 1. 이후 출생한 만 0~1세 아동(0~23개월)  
※ 2021년 이전 출생아 :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지급
- **지원액** : 0세 월 100만원, 1세 월 50만원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정부24(www.gov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보육아동과 ☎ 033-737-2725

### 양육수당

- **지원대상** : 보육시설 미 이용하는 가정의 아동(86개월 미만)
- **지원내용**

양육수당	장애아동 양육수당
• 24~86개월 미만 월 1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4~35개월 월 20만원</li> <li>• 36~86개월 미만 월 10만원</li> </ul>

※ 보육료 및 부모급여(영아수당), 기타 양육수당, 유아학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

- **지원기간** :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bokjiro.go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보육아동과 ☎ 033-737-2725

### 아동수당

- **지원대상** :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(0~95개월)
- **지원내용** : 매월 25일 10만원 지급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bokjiro.go.kr) 정부24(www.gov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보육아동과 ☎ 033-737-2756



### 첫만남이용권

- **지원대상** : 2022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(출생신고 완료된) 아동
- **지원내용** :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(국민행복카드)
  - 2022. 1. 1. 이후 출생아동 : 첫째아(200만원), 둘째아 이상(200만원)
  - 2024. 1. 1. 이후 출생아동 : 첫째아(200만원), 둘째아 이상(300만원)
- **지원기간** :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(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소멸)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정부24시(www.gov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보육아동과 ☎ 033-737-2583

### 출생축하금

- **지원대상** :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(0~95개월)
- **지원내용** : 매월 25일 10만원 지급
  - 첫째아(30만원), 둘째아(50만원), 셋째아(100만원)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bokjiro.go.kr) 정부24시(www.gov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보육아동과 ☎ 033-737-2583



###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
  - 2024. 1. 1. 이후 출산한 자
  - 2024. 1. 1.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    - ※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지원 제외(다만,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 지원 대상 포함)
    - ※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등록된 경우 지원 가능
- **지원내용** :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
- **지원방법** :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지급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정부24(www.gov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☎ 033-737-2708

### 보육료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만0~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
- **지원내용**

자격 구분	지원 대상	지원 비율	연령	지원단가(원)		비고
				자격구분	자격구분	
영유아	어린이집 이용 만0~5세	100%	만0세반	540,000	587,000	장애아보육료는 교사대 아동비율(1:3) 미준수 또는 장애아전담보육교사나 특수교사 미배치의 경우: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적용
			만1세반	475,000		
			만2세반	394,000		
			만3세반	280,000		
			만4세반	280,000		
만5세반	280,000					
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bokjiro.go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보육아동과 ☎ 033-737-2754

### 아이돌봄서비스 제공

- **지원대상** : 12세 이하 아동
- **지원내용** :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,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 - ※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가족센터 ☎ 033-747-6012 · 원주시 여성가족과 ☎ 033-737-2744

###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12세 이하(초등학교 이하)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, 임산부
- **지원내용** : 취약계층 아동(가족) 중 사업 대상 발굴 및 문제·요구 파악,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·영양·교육·문화·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
- **신청장소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**문의처** : 원주시 여성가족과 ☎ 033-737-2776

### 셋째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

- 지원대상 : 셋째아 이상 출생아 1인당 월 2만원 이하
- 지원기간 : 보험계약일로부터 60개월(5년 납입, 만 10세까지 보장)
- 문의처 : 원주시 보육아동과 ☎ 033-737-2583

### 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지원

- 지원대상 : 2021. 1. 1. 이후 관내 출생아
- 지원내용 :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시 1인당 1회 5만원 지원
- 신청장소 : NH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
- 문의처 : NH농협은행 원주시청출장소 ☎033-731-2627  
원주시 복지정책과 ☎ 033-737-2309



### 산후 건강관리 지원

- 지원대상
  - 자녀를 출산한 산모(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·사산 포함)
  - 신청날짜(보건소 신청일) 기준,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
- 지원내용
  -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(출산 당일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 의료비 포함) 및 약제비
  -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(첫째 최대 15만원, 둘째 최대 20만원, 셋째 이상 최대 30만원)
    - ※ 지원 제외 항목 :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한 내역
    - 산후조리원비,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, 간이영수증 의료비,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내역
- 신청방법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온라인 보조금24(www.gov.kr)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, 신청자(산모) 통장 사본
- 문의처 :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실 ☎ 033-737-4057

###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- 지원내용 : 원주시를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
- 지원대상
  - 첫째아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산모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
  - 둘째아 이상 :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
- 신청방법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또는 건강보험증 사본) 등
- 문의처 :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실 ☎ 033-737-4057

###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- 지원대상
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  - 신청날짜(보건소 신청일) 기준,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
- 지원내용
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: 1인 최대 20만원(본인부담금 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: 큰아이 1명 최대 9만원/큰아이 2명 이상 14만원(본인부담금 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    - ※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 내용 : 큰아이의 빨래, 반찬준비, 청소, 등하원(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제외)
- 신청방법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
  - ※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(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)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제공기관 발행 본인부담금 영수증, 신청자(산모) 통장사본
- 문의처 :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실 ☎ 033-737-4057

### 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 지원

- 시행일 : 2024. 1월 ~
-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% 이하 수급 가구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아동
  - ※ 기준 : 만 12세~17세까지 아동 중 중위소득 40% 이하 수급 가구(생계, 의료급여)
- 지원내용 :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(지자체)가 월 10만원 내에서 1:2매칭으로 지원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문의처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·원주시 보육아동과 ☎ 033-737-2582



###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신부의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처치·수술료, 검사료 등 비용 지원  
 ※ 임신부 사망 및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

#### 19대 고위험 임신질환

조기진통, 분만 시 과다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질박 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제한, 자궁 및 부속기 질환

- **지원내용** : 최대 300만원(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)  
 (단, 의료급여수급자는 100% 지원)
- **신청방법** :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방문간호사 등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
 ※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
- **신청장소·문의처** :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실 ☎ 033-737-5216

### 임산부·영유아 영양플러스

- **지원대상** : 관내 임산부·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,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 
 (빈혈, 저체중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)  
 - 기준중위소소득의 80%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함
- **지원내용**  
 - 모유수유방법,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, 상담  
 - 임산부의 영양관리, 월령별 이유진행방법,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 
 - 교육 또는 상담횟수 : 월 1회 이상 참여
- **신청방법** : 전화 접수 후 직접 방문, 온라인 신청 정부24(www.gov.kr)
- **구비서류** : 외국인 부모일 경우 외국인등록증, 임신부일 경우 산모수첩(원본)
- **문의처** :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상담실 ☎ 033-737-4059

###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'심화평가 권고' 로 판정된 영유아
- **지원내용** :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
 - 기초생활수급자(의료·주거·생계)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원  
 - 건강보험가입자 : 최대 20만원
- **신청방법** : 보건소 2층 의료지원과 방문신청
- **문의처** : 원주시 의료지원과 ☎ 033-737-5217

###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 
 ※ 미숙아 :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.5kg 미만의 출생아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경우

#### 지원내용

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	미숙아	1kg미만	10백만원
		1kg이상 ~ 1.5kg 미만	7백만원
		1.5kg이상 ~ 2kg 미만	4백만원
		2kg이상 ~ 2.5kg 미만, 재태기간 37주 미만	3백만원
	선천성 이상아	5백만원	

- **신청장소·문의처** :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실 ☎ 033-737-4058

###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(2인 이상)가구의 2세 미만 영아
- **지원내용** : 기저귀(월 9만원), 조제분유(월 11만원)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
- **지원기간** : 만 2세 미만 영아(0~24개월)에 대해 최대 24개월  
 ※ 출생아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
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만큼 지원(신청 전 소급 지원 없음)
- **신청방법**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(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 신청
- **문의처** :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실 ☎ 033-737-4058



##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(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)

- **주요내용** :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(금융거래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세금, 연금, 공제회 등)
- **신청자격** : 사망자의 상속인(우선순위별)
  - 1순위 : 사망자의 자녀, 배우자
  - 2순위 :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
  - 3순위 : 사망자의 형제자매(1,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)
- **신청기한**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- **결과확인** : 처리기간 7 ~ 20일 이내
  - [토지·지방세] 방문·우편·문자 중 선택
  - [자동차세] 신청서 접수 시 즉시 확인
  - [금융] 금융감독원홈페이지(www.fss.or.kr) 확인
  - [국세] 국세청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확인
  - [국민연금]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(www.nps.or.kr) 확인
  - [공무원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] 문자
- **처리대상 재산조회 종류(8종)**

① 지방세(체납액·고지액 등)	⑤ 국세(체납액·고지액 등)
② 토지(소유내역)	⑥ 국민연금(가입여부)
③ 자동차(소유내역)	⑦ 공무원연금(가입여부)
④ 금융거래(은행·보험 등)	⑧ 사학연금(가입유무)
- **문의처** :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☎1332 / 국세 국세청 ☎126 /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☎1355 / 토지, 자동차, 지방세는 토지관리과 / 차량등록사업소, 징수과, 세무과에 문의

### 재산상속 한정승인, 포기청구

- 한정승인 :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면제 상속을 승인
- 포기 :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
- 청구기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문의 :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☎ 033-738-1000, 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

### 부동산 상속

- 신청대상 : 소유권 이전등기, 협의분할 소유권 이전등기, 유증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
- 처리기관 :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
- 문의 : 대법원등기민원콜센터 ☎ 1544-0773

###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

- 신청대상 :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
- 처리기관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문의 :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☎ 033-737-4334

### 취득세, 등록세 신고납부

- 신청대상 : 부동산,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
- 납부기한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고기관 : 상속재산 관할 소재지 시·군·구청
- 문의 : 원주시 세무과 ☎ 033-737-2336

### 상속세 신고납부

- 납부대상 : 상속인 또는 수익자(受遺者)
- 납부기한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문의 : 국세청 콜센터 ☎ 126

### 국민연금 청구

- 지급종류 : 유족연금, 반환일시금, 사망일시금 등
- 지급대상 :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
- 문의 : 국민연금관리공단 ☎ 1355

###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

- 신고대상 : 공중위생영업자, 식품위생영업자 외 주요지위승계 신고대상 상속인
- 신고기관 : 당초 허가·신고·등록관청

### 기타

- 예금·보험 지급 청구 : 해당 금융기관
- 신분증 반납 : 행정복지센터
- 신용카드, 휴대전화, 유선방송, 인터넷서비스 등 거래계약 해지 신청 : 해당 기관(업체)

##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

- **시행일** : 2024. 1월 ~
- **지원대상** : 무연고자, 저소득층, 시장·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- 무연고자 : 연고자가 없는 국내·외국인 사망자,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·외국인 사망자,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한 국내·외국인 사망자
  - 저소득층 : 연고자가 미성년자,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
- **지원내용** : 1인당 최대 80만원(빈소 마련, 제례물품, 제물 상차림, 장례지도사 등)
- **신청장소** :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☎ 033-737-2685
- ※ 예산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은 제한이 될 수 있음

## 개명신고 이후



### 주민등록증 재발급

- 신청기관 :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구비서류 : 기존 주민등록증, 사진(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.5cm×세로4.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) 1매

### 인감 변경 신고

-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구비서류 : 개명된 신분증, 인감도장(개명 후 성명)

### 여권 재발급

- 신청기관 : 가까운 시·군·구청 여권발급 부서
- 구비서류 : 기존 여권, 개명된 신분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
### 운전면허증 재발급

- 신청기관 : 원주운전면허시험장 ☎ 1577-1120  
원주경찰서 민원실 ☎ 033-738-0859
- 구비서류 : 기존 운전면허증, 개명된 신분증

### 자동차등록증 재발급

- 처리기관 : 가까운 시·군·구 자동차등록 접수처
- 구비서류 : 본인 방문 시 - 개명된 신분증  
대리인 방문 시 -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소유주 신분증 사본, 소유주 도장
- 문 의 처 :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☎ 033-737-4331

### 기 타

-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 :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(등기민원 콜센터 ☎ 1544-0773)
- 신용카드, 휴대전화, 은행, 보험 등 명의자 변경 :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해당업체(기관)에 신청

## 혼인신고 이후

### 전입 신고

- 신청기관 : 변경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신고자 :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
- 구비서류 : 전입자 신분증과 도장,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(신고인은 서명 가능)  
※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참 시 확정일자 부여

###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신고

- 시행일 : 2024년 6월 1일부터
- 사업내용 :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
- 신고대상 :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
※ 군(郡)지역 제외
- 신고방법 : 관할 임대한 주택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(<https://rtms.molit.go.kr/>)  
※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미이행시 : 계도기간(2021. 6. ~ 2024. 5.) 종료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다문화 가족 상담 및 지원

- 지원대상 :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
- 지원내용 : 다문화가족 한글교육, 가족상담, 자녀성장지원교육, 언어발달지원  
자녀 학습지원, 방문교육서비스, 아이돌봄서비스, 초기정착 및 취업지원 등
- 구비서류 :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- 문 의 처 : 원주시 가족센터 ☎ 033-765-8134~5  
원주시 여성가족과 ☎ 033-737-2743



## 이혼신고 이후

### 한부모 가정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혼, 미혼가정, 조손가정
- **지원기준** : 중위소득 63%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한부모가족
- **지원내용** : 18세 미만 아동 아동양육비(월 21만원), 취학아동 교육비 지원(연 10만원),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원), 추가 아동양육비 등
- **신청기관**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여성가족과 ☎ 033-737-2743

###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 72%이하인 가구  
-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
(2024년도 지원대상 : 1999. 1. 1. 이후 출생한 청소년한부모)
- **지원내용**
  - 아동양육비 지원(월 35만원/만0~1세 아동 40만원)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
  - 검정고시 학습비(연 154만원 이내)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(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
  -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(학업, 직업훈련, 취업활동 실적가구)
- **신청기관**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**문의처** : 원주시 여성가족과 ☎ 033-737-2743

###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

- **지원대상** :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  
-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, 2순위 부자가족, 3순위 모자가족  
- 최장 6년(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)
- **지원내용**
  -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(700만원 이내), 자립지원에 따른 자조모임, 취업상담 및 연계 등
  - 입주자 부담 : 입주자부담금 70만원(퇴거 시 전액 환급), 월 임차료(10만원 이내) 관리비 및 공과금 등
  - 임대주택 : 판부면, 개운동, 단계동, 단구동, 관설동 소재 다세대 주택(15평~23평형)
- **신청방법** : 원주시 가족센터 ☎ 764-8612~3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
- **문의처** : 원주시 여성가족과 ☎ 033-737-2743

## 출생·사망·개명·혼인·이혼 신고

### 출생신고

- **신고인** : 부 또는 모
- **신고장소** :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전국 시·구청
- **신고기간** :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(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)
- **구비서류** : 출생신고서, 출생증명서, 신고인 신분증 등
- **유의사항** : 이름은 인명용 한자 사용, 5자 초과할 수 없음

### 사망신고

- **신고인** : 친족, 동거자, 보호시설장,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
- **신고장소** :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전국 시·구청
- **신고기간** :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(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)
- **구비서류** : 사망신고서, 사망진단서(또는 시체검안서), 신분증(사망자, 신고인)

### 개명신고

- **신고인** : 개명당사자, 개명당사자가 의사능력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
- **신고장소**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전국 시·구청
- **신고기간** : 법원 결정일(송달일)로부터 1개월 이내(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)
- **구비서류** : 개명신고서, 개명허가결정등본, 신분증

### 혼인신고

- **신고인** : 혼인 당사자
- **신고장소** : 전국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전국 시·구청
- **신고기간** : 없음
- **구비서류** : 혼인신고서(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必), 신분증(혼인 당사자)

### 이혼신고

- **신고인** : 이혼 당사자
- **신고장소** : 전국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전국 시·구청
- **신고기간**
  - 협의상 이혼(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)
  - 재판상 이혼(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)
- **구비서류** : 이혼신고서(협의 이혼 시 양방의 서명 또는 날인 必), 신분증
  - 협의상 이혼 :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, 친권자지정 협의서
  - 재판상 이혼 :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(조정·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)